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25회 임시회

# 검토보고서

2018. 10. 30 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#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8. 10. 15.
- 회부일 : 2018. 10. 19. (의안번호 :18 - 77)

### 2. 개정이유

구정 감시 기능 강화 및 구민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ombudsman 확대  
개편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ombudsman 구성의 정수 변경(안 제3조제2항)
  - 3명 이내 → 5명 이내
-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ombudsman의 당연 퇴직 명문화 및 해촉 사유  
구체화(안 제8조제2호, 안 제9조제2항)
  - ombudsman 운영의 활성화 및 현행 제도 보완을 위한 표준 조례  
개정안 적용

### 4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3인의 ombudsman으로 시행하여 2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정권고, 의견표명, 조정, 각하, 소송 취하 등의 성과를 내는 등 한정적 시간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였음. 그러나 점차 민원내용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고 특히, 보건, 복지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빠른 민원 해결과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ombudsman 위원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에서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권고기준에도 부합하며, 타 자치구에서도 ombudsman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만, 구정 감시기능 강화 및 구민 권익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출발한 ombudsman 제도가 있는 것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